



제 42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 우량농지의 농지전용허가 등 제한사유에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등 목적인 경우 예외 인정〉  
■ 이종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152호)

2025. 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2 |
| 1. 우량농지의 농지전용허가 등 제한사유에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br>등 목적인 경우 예외 인정 ..... | 2 |

## I. 제안경위

1. 제 출 자 : 이종배의원 등 10인
2. 제 출 일 : 2024. 12. 31.
3. 회 부 일 : 2025. 1. 2.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농지전용 허가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을 할 때 그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예정 지역으로 편입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부지를 용이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온실가스 배출 감축, 에너지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거나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2항제1호 단서 신설).

### Ⅲ. 검토의견

#### 1. 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사유에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등 목적인 경우 예외 인정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농지전용 허가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등을 할 때,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등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전용하거나 타용도 일시사용하려는 농지가 전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여 전용이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제한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2항제1호 단서 신설).

| 현행                                                                                                                                                         | 개정안                                                  |
|------------------------------------------------------------------------------------------------------------------------------------------------------------|------------------------------------------------------|
| 제37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 ①<br>(생략)                                                                                                                               | 제37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 ①<br>(현행과 같음)                     |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br>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4조제1항에<br>따른 농지전용허가 및 같은 조 제2<br>항에 따른 협의를 하거나 제36조에<br>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br>및 협의를 할 때 그 농지가 다음 각<br>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용을 | ② -----<br>-----<br>-----<br>-----<br>-----<br>----- |

| 현행                                                                                                      | 개정안                                                                                                                                                                                                  |
|---------------------------------------------------------------------------------------------------------|------------------------------------------------------------------------------------------------------------------------------------------------------------------------------------------------------|
| 제한하거나 타용도 일시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br>-----.                                                                                                                                                                                      |
| 1.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예정 지역으로 편입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단서 신설>                     | 1. -----<br>-----<br>-----<br>-----<br>-----<br><u>경우. 다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감축, 에너지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거나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u> |
| 2. 해당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일시사용하면 일조·통풍·통작(通作)에 매우 크게 지장을 주거나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를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 2. ~ 5. (현행과 같음)                                                                                                                                                                                     |
| 3. 해당 농지를 전용하거나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면 토사가 유출되는 등 인근 농지 또는 농지개량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 4. 전용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계획 및 자금 조달계획이 불확실한 경우                                                               |                                                                                                                                                                                                      |
| 5.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 목적 실현에 필요한 면적보다 지나치게 넓은 경우                                                          |                                                                                                                                                                                                      |
|                                                                                                         | <b>부칙</b>                                                                                                                                                                                            |
|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가.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은 공감함.

다만, 현행 법령은 농업 생산성 제고와 농지보전을 위해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일시사용으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면적을 특정하고 있어, 포괄적인 시설에 대해 예외로 두기 어려움.

또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위한 목적’으로 농지를 이용하는 것의 구체적 의미 내지 범위가 불분명하여 법 해석 및 적용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 나. 제21대국회 심사경과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동 개정안을 발의한 이종배의원이 같은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23.8.11.)하여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없이 임기만료로 폐기('24.5.29.)되었음.

## 다. 검토의견

현행법 제34조 및 제36조<sup>1)</sup>에 따르면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또는

---

1) 「농지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 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삭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제37조제2항<sup>2)</sup>은 각각 농지전용허가 및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의 심사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제2항에 따른 협의의 거친 농지나 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제35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제36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① 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한다)과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주(主)목적사업(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만 해당한다)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積置)하거나 매설(埋設)하는 경우<후 략>

2) 「농지법 시행령」 제33조(농지전용허가의 심사) 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제출받은 날(제3항에 따라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 또는 보정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보내야 하며, 시·도지사는 1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32조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인 경우에 한한다) 및 법 제37조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2.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려는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될 것<목 생략>

3.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일 것<목 생략>

4.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려는 농지를 계속하여 보전할 필요성이 크지 아니할 것가. 경지정리 및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 여부

나. 해당 농지가 포함된 지역농지의 집단화 정도<후 략>

「농지법 시행령」 제37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②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신청 받은 날(제3항에 따라 신청 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 또는 보정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1. 법 제37조제2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설치하려는 시설이나 농지를 일시사용하려는 사업의 규모·종류·지역여건 등을 참작할 때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가 해당 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

3.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 또는 사용기간이 해당 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 또는 기간인지의 여부

4.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가 경지정리·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있는지의 여부(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후 략>

농지전용 허가의 심사기준으로는 시설 규모 및 용도의 적정성 여부, 전용면적의 적정성 여부, 농업생산기반정비 여부, 농지의 집단화 정도, 연쇄적 농지잠식 우려 등을 규정함.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의 심사기준으로는 사업의 적합성 여부, 사용면적 및 기간의 적정성 여부, 농어촌생활환경 피해 여부, 복구계획의 타당성 등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법 제37조제2항은 전용이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는데, 그 사유는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등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농지전용 한정),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임.

#### [ 농지전용과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비교 ]

| 구분    | 농지전용                                                                                                                                                                 | 타용도 일시사용                                                                                                                                |
|-------|----------------------------------------------------------------------------------------------------------------------------------------------------------------------|-----------------------------------------------------------------------------------------------------------------------------------------|
| 개념    |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                                                                                                                 | 농지를 일시적으로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                                                                                                    |
| 대상 시설 | 모든 시설                                                                                                                                                                | 간이 농·축·수산업용시설, 컨테이너 형태 수직농장, 주목적사업의 부대시설(예: 도로건설사업에 따른 야적장), 광물 채취                                                                      |
| 허가 근거 | 농지법 제34조제1항                                                                                                                                                          | 농지법 제36조제1항                                                                                                                             |
| 허가 권자 | 농식품부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br>* 면적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 위임 <sup>3)</sup>                                                                                                | 시장·군수·구청장                                                                                                                               |
| 허가 기간 | ×                                                                                                                                                                    | 허가시설별 상이 <sup>4)</sup>                                                                                                                  |
| 심사 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설 규모 및 용도의 적정성 여부</li> <li>·전용면적의 적정성 여부</li> <li>·농업생산기반정비 여부, 농지집단화 정도, 연쇄적 농지잠식 우려 등</li> <li>·전용목적 사업의 실현성 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의 적합성 여부</li> <li>·사용면적 및 기간의 적정성 여부</li> <li>·농어촌생활환경 피해 여부</li> <li>·복구계획의 타당성 등</li> </ul> |
| 제한 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등 우량농지 보전 필요</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매우 큰 영향 우려 등</li> </ul>                                                            |

※ 자료: 국회 법률정보시스템상 관련 법령 내용 재구성

개정안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등 우량농지 보전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이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등’이라 함)을 위한 목적인 경우 전용이나 타용도일시사용의 제한사유에서 제외하려는 것으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부지 확보를 용이하게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 같은 점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첫째,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등 목적 달성의 이익과 우량농지<sup>5)</sup> 보전 이익을 상호 비교형량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sup>6)</sup>에 따라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의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국가비전으로 삼고 있는 등 ‘탄소중립’은

3) [ 농지 면적별 허가·협의권자(농지법 시행령 제71조) ]

| 농 지 구 분     | 농식품부장관      | 시·도지사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
|-------------|-------------|--------------------|-------------|
| 농업진흥지역 안 농지 | 30,000㎡ 이상  | 3,000㎡ ~ 30,000㎡   | 3,000㎡ 미만   |
|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 300,000㎡ 이상 | 30,000㎡ ~ 300,000㎡ | 30,000㎡ 미만  |

※ 자료: 농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지과 제출자료('25.1.20)

4)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 등: 최초 7년, 연장 5년/염해 간척농지 내 태양광 시설: 최초 5년 연장 18년(3년 단위)/ICT기술을 접목한 가설건축물 형태의 작물재배사: 최초 7년, 연장 9년(3년 단위) 등

5) 우량농지는 이 법에 따르면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농지로 이해할 수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조에서 우량농지를 경지정리·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농지로 규정하고 있음.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7조(국가비전 및 국가전략) ①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국가비전으로 한다.

제8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①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중장기감축목표”라 한다)로 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40퍼센트를 말한다.

우리사회의 핵심 가치 중 하나임.

이에 정부는 2023년 4월 4대전략 12대과제를 마련하여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 [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



※ 자료 : 관계부처 합동,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 2023. 4.

한편, 전세계적으로 2022년을 전후하여 곡물 가격 상승과 각국의 식량수출 제한조치에 따른 식량 공급 차질 사태를 겪으면서 식량안보가 중요한 화두로 제기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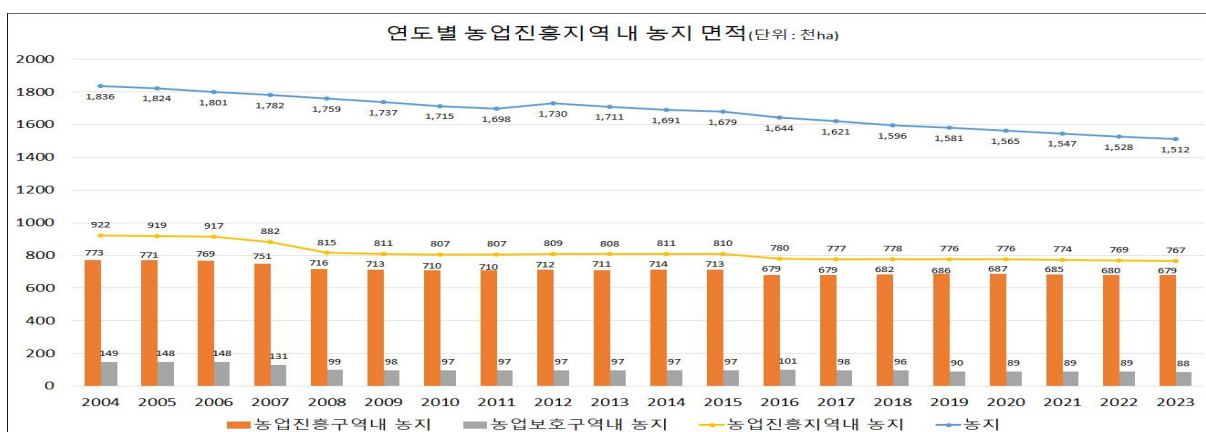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쌀을 제외한 주요 곡물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식량안보에 취약한 구조로, 식량안보 보장을 위한 적정 우량농지의 확보가 국가의 사회적·경제적 안정과 밀접하게 결부된 사안이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음.

최근 10년간(2014~2023) 농지면적은 19만 9,000ha 감소(△13.2%)하였고, 우량농지가 규모화된 지역인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역시 4만 2,000ha 감소(△5.4%)하였음.

#### [ 농업진흥지역 농지 면적 등 감소 추이 ]

| 구 분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
| ■ 농지면적(천ha)        | 1,691 | 1,679 | 1,644 | 1,621 | 1,596 | 1,581 | 1,565 | 1,546 | 1,528 | 1,512 |
| ■ 농업진흥지역(천ha)      | 1,036 | 1,036 | 994   | 988   | 987   | 986   | 987   | 986   | 986   | 986   |
| - 진흥구역             | 927   | 927   | 862   | 849   | 842   | 840   | 841   | 840   | 840   | 840   |
| - 보호구역             | 109   | 109   | 132   | 139   | 145   | 146   | 146   | 146   | 146   | 146   |
| ■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천ha) | 811   | 810   | 780   | 777   | 778   | 776   | 776   | 773   | 769   | 766   |
| - 진흥구역 농지          | 755   | 754   | 705   | 700   | 698   | 696   | 696   | 693   | 690   | 687   |
| - 보호구역 농지          | 56    | 56    | 75    | 77    | 80    | 80    | 80    | 80    | 79    | 79    |

※ 자료: 농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지와 제출자료('25.1.20)



※ 자료: 농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지와 제출자료('25.1.20)

우량농지의 감소는 식량자급률<sup>7)</sup>에도 영향을 미쳐온바, 식량자급률 실적은 2019년 이후 50%를 하회하여 목표<sup>8)</sup>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쌀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20%를 하회하고 있음.

#### [ 연도별 식량자급률 실적 ]

| 구분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
| 식량자급률<br>(식용곡물) | 54.1 | 51.9 | 50.3 | 49.3 | 49.3 | 44.4 | 49.3 | 49.0 |
| (쌀 제외시)         | 19.5 | 17.8 | 19.0 | 19.6 | 19.7 | 18.7 | 17.9 | 19.5 |

※ 자료: 농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지와 제출자료('25.1.20)

또한, 최근 5년 신규 농지 전용허가 및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면적을 살펴보면, '매년' 1만 6천ha 이상의 농지가 전용되고 있고,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면적도 매년 1천ha를 상회하고 있음(2023년의 경우 2천 ha 이상).

#### [ 신규 허가 면적 ]

| 구분                   | '19    | '20    | '21    | '22    | '23    |
|----------------------|--------|--------|--------|--------|--------|
| 전용허가면적(ha)           | 16,467 | 17,429 | 19,435 | 16,666 | 16,763 |
| 타용도 일시사용<br>허가면적(ha) | 1,255  | 1,624  | 1,636  | 1,437  | 2,043  |

※ 자료: 시·도 행정통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지와 제출자료('25.1.20)

이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등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 농지전용을 활용할 것인지 여부는 상기 내용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7) 식량자급률: 사료용 소비·수출·원조를 제외한 식량의 국내 소비량 대비 국내 생산량 비율  
(계산식) 식량자급률(%) = [ 국내 생산량 / 수요량 - 사료·수출·해외원조 ]

8) 농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식량 등의 자급목표를 수립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에 따르면 17년까지 자급목표는 57%였으나, 2022년까지 55.4%로 하향 조정된 이후 2027년까지 55.5%를 달성하도록 하고 있음.

둘째,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등 목적 달성을 위한 우량농지 전용등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입법방식은 현행 법령 체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먼저, ‘전용 허가’의 경우 현행법에 허가절차가 불필요한 전용사유를 예외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허가가 필요한 전용의 심사기준의 하나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 여부 등 농지의 보전 필요성이 크지 아니할 것’을 시행령에서 규정(제33조제1항제4호)하고 있음.

이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등 목적 달성을 위한 이익이 큰 것으로 인정된다면 해당 사유를 제한사유의 예외로서 규정할 것이 아니라 시행령상 심사기준을 적용받지 않도록 허가절차가 불필요한 전용사유에 직접 명시하는 것이 현행 법령체계에 부합할 것으로 보임.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의 경우에도 일시사용 허가의 용도를 명시하고 있는 조항(제36조제1항)이 있는데 일시사용허가의 제한사유에 예외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일시사용 허가의 용도를 신설하는 것은 법체계 및 해석상 혼선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일시사용 허가가 가능한 대상으로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다만, 개정안에서 예외를 두고자 하는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등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현행법에 따르면 ‘전용하려는 농지’에 적용되는 제한사유로서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와는 무

관한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 농지전용 및 타용도 일시사용 관련 규정 ]

| 구분                                | 농지전용                                                                                                                                                                            | 타용도 일시사용                                                                                                                                                                                 |
|-----------------------------------|---------------------------------------------------------------------------------------------------------------------------------------------------------------------------------|------------------------------------------------------------------------------------------------------------------------------------------------------------------------------------------|
| 허가<br>절차<br>불필요<br>(§34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등에 있는 농지로서 협의를 거친 농지</li> <li>▸ 농지전용신고 대상 농지</li> <li>▸ 산지전용허가 없이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li> </ul>   |                                                                                                                                                                                          |
| 허가<br>용도<br>(§36①)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허가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 등의 설치</li> <li>▸ 주(主)목적사업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 등 설치</li> <li>▸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석과 광물 채굴</li> <li>▸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li> </ul> |
| 허가<br>심사<br>기준<br>(시행령 §36①·§37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 규모 및 용도의 적정성 여부</li> <li>▸ 전용면적의 적정성 여부</li> <li>▸ <u>농업생산기반정비 여부, 농지집단화 정도, 연쇄적 농지잠식 우려 등</u></li> <li>▸ 전용목적 사업의 실현성 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의 적합성 여부</li> <li>▸ 사용면적 및 기간의 적정성 여부</li> <li>▸ 농어촌생활환경 피해 여부</li> <li>▸ 복구계획의 타당성</li> </ul>                                                |
| 제한<br>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전용하려는 농지</u>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등 우량농지 보전 필요</li> </ul>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매우 큰 영향 우려 등</li> </ul>                                                                                                   |                                                                                                                                                                                          |

※ 자료: 국회 법률정보시스템상 관련 법령 내용 재구성

셋째,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을 위해 예외적으로 우량농지의 전용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실제 전용이 필요한 시설 및 면적 등이 특정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개정안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위한 경우’는 시행령으로 구체화하도록 하고 있으나, 목적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우량농지의 전용이 가능한 시설이나 면적 등이 광범위하게 해석·적용

될 여지가 있음.

우량농지는 보전의 필요성이 큰 농지라는 점에서 전용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그 요건은 최소한의 범위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
|-------|
| 문 의 처 |
|-------|

|              |
|--------------|
| 02)6788-5415 |
|--------------|